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717

발의연월일: 2021. 9. 28.

발 의 자: 박대수 · 이종성 · 지성호

김용판 · 김희곤 · 안병길

김선교 · 김태호 · 이주환

김정재 · 최춘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 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 동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민간부문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교원과 공무원에게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교원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조직관리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교원에게도 도입하여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교원에게 민간부문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취지에 맞춰

이를 적용함으로써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 조제5항 및 제14조제2항). 법률 제 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단위와 조합원의 수 등을고려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원은 봉급의 손실 없이 임용권자와 협의·교섭, 고충처리와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중 "제24조, 제24조의2"를 "제24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제5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
	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
	의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단위와 조합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교원은 봉급의 손실 없이
	임용권자와 협의·교섭, 고충처
	리와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
	<u>무를 할 수 있다.</u>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2
정법」 제2조제4호라목, <u>제24</u>	<u>체24</u>
<u>조, 제24조의2,</u> 제29조제2항부	조
터 제4항까지,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	
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	
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3	

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제5항, 제62 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 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 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 1항제2호 단서, 제88조, 제89조 제1호, 제91조 및 제96조제1항 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 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